

대학원 의학과 의 학사 내규

제정: 1994. 03. 01

개정: 2018. 01. 31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의학과의 학사 내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 정신과 교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본교의 목적을 이어 받아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학문의 기초 및 응용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학위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학위과정에 설치된 학과의 전공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지원자격) ①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전형 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기 등)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이수학점)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충과목 이수) ① 하위 학위의 취득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 또는 박사학위 과정 입학자 중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소지자는 제7조에서 정한 정규 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보충과목은 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선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상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입학자는 학장이 선수과목을 부과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격시험과 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이수내역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 24학점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선수과목 중 학과장이 학점을 인정할 경우에는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선수과목은 3학기 이전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으로 한다.

제12조(이수과목) ① 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별, 학과별 및 전공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③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대학원 학생은 2학기부터 연구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지도과목은 연구지도학점으로 평가한다.

제13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제출 전에 소속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은 연 2회 이상,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어 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의 경우 전석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으며, 외국어 시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 항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 성적기준, 해외연수의 성적 및 인정기간 등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1. 토플(TOEFL) 550점(PBT) 또는 213점(CBT) 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텡스(TEPS) 700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 ⑥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권 국가에서 해외 수학(연수)시 면제가 가능하다.
- ⑦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 모국어 아닌 외국어 학생)에서 연수시에만 면제 가능하다.
- ⑧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 ⑨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 선택가능하며, 영어 선택은 영어 모국어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 ⑩ 외국어시험은 언어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5조(종합학력시험) ①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취득한 자
- ②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2. 박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문적 심도를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한다.
 3.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만 선택 가능하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개설과목과 유사하거나 일치할 때에는 이를 과목별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며 학과 전임교원 당 1과목씩 출제와 채점을 한다.
- ④ 종합학력시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며, 종합학력시험 과목 중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 ⑤ 기초의학계열 박사과정은 기초의학계열에서 별도로 정한 박사과정 종합학력시험으로 대체한다.

제16조(논문 지도교수의 선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특수대학원 학생은 2학기 말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한다. 다만, 논문 지도교수는 2년(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③ 선정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공변경, 지도교수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10명, 박사학위과정 6명 이내로 하되,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17조(논문심사 신청)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서, 요약서 및 학위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 요건 충족
2.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

③ 학위논문의 심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3. 요약서 1부(논문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 하에 작성되고, 동일내용이 타인에 의해 유사한 목적에 이미 사용된 것이 아님을 진술하는 내용)
4. 이력서(박사학위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

④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각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제19조(학위논문 예비발표)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논문 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예비발표를 할 수 있다.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예비발표의 시행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자

② 예비발표 대상자는 예비심사원 제출 시 논문작성계획서와 예비심사용 논문을 첨부하여 본 심사 1개학기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위원은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교외전공자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심사대상자가 박사과정 임상의학 전공자일 경우에는 기초의학교원 1인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④ 예비발표는 학기 당 1회 실시하되, 구체적인 형식은 주임교수가 정한다.

⑤ 예비발표의 심사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②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논문재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결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재학연한 이내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의 수료만을 인정한다.

제23조(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은 제10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논문제출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일정 부수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석, 박사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

계열	학과	전공
의학	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분자세포생물학, 사회의학,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신경과학, 정형외과학, 흉부외과학, 신경외과학, 성형외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진단방사선과학, 방사선종양학, 마취통증의학, 진단검사의학, 재활의학, 핵의학, 가정의학, 병리학, 치과학, 산업의학
	협동과정	의학레이저, 나노바이오의과학과